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신설하고, 국세청의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에 복수 직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확대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5명)을 행정직군 정원 16명(세무서기보 11명, 전산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3항에 지방세무관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보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지방세무관서 및 세무서의 사무 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을 둔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관리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교육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둔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
2. 간접징수수단 업무지침 수립
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세외수입 타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제7조제4항제8호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의2제5항제6호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30조제6항제9호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남세무서·성동세무서·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6 중 총계 “905”를 “907”으로 하고, 일반직 계 “901”을 “903”로 하며, 행정사무관 “121”을 “122”로, 세무주사 “242”을 “241”로,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를 “1”로 추가하고, 세무주사보 “165”을 “166”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40”를 “942”으로 하고, 일반직 계 “936”을 “938”로 하며, 행정사무관 “127”을 “134”로, 세무주사 “247”을 “240”로,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를 “1”로 추가하고, 세무주사보 “170”을 “17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111”을 각각 “20,118”으로 하고, 세무

주사 “4,582”를 “4,586”로, 세무주사보 “4,566”을 “4,569”로 하며, 세무서기보 “3,311”을 “3,322”로, 전산서기보를 “57”을 “62”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2”를 “11”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44”를 “229”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216”을 각각 “20,223”으로 하고, 세무주사 “4,643”를 “4,647”로, 세무주사보 “4,569”을 “4,572”로 하며, 세무서기보 “3,311”을 “3,322”로, 전산서기보를 “57”을 “62”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2”를 “11”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44”를 “229”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 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 수입징수관리2팀장은 2029년 1월 4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6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제4조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을 둔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 관리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교육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
< 신 설 >	<u>제4조5(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u>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둔다.</u> <u>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u>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u>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u> <u>2. 간접징수수단 업무지침 수립</u> <u>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교육에 관한 사항</u> <u>4. 국세외수입 타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u> <u>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u>
제7조(개인납세국) ① ~ ③ (생략)	제7조(개인납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8. <u>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u>	8. <u>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u>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u>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u> 제30조(세무서) ① · ② (생략)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 신 설 > ④ · ⑤ (생략)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u>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u>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u>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u> 제30조(세무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다만, 강남세무서·성동세무서·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9. <u>세무대리인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905</u>	<u>907</u>	+2
일반직 계	.		.	.	
	.		.	.	
			<u>901</u>	<u>903</u>	+2
행정사무관	.		.	.	
	.		.	.	
			<u>121</u>	<u>122</u>	+1
세무주사	.		.	.	
	.		.	.	
			<u>242</u>	<u>241</u>	-1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		.	.	
	.		.	.	
			<신 설>	<u>1</u>	+1
세무주사보	.		.	.	
	.		.	.	
			<u>165</u>	<u>166</u>	+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40</u>	• <u>942</u>	+2
일반직 계	• • <u>936</u>	• • <u>938</u>	+2
행정사무관	• • <u>127</u>	• • <u>134</u>	+7
세무주사	• <u>247</u>	• <u>240</u>	-7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 • <u><신 설></u>	• • <u>1</u>	+1
세무주사보	• • <u>170</u>	• • <u>171</u>	+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0,111	20,118	+7
일반직 계	20,111	20,118	+7
세무주사	4,582	4,586	+4
세무주사보	4,566	4,569	+3
세무서기보	3,311	3,311	+11
전산서기보	57	62	+5
열관리운영서기보	12	11	-1
사무운영서기보	244	229	-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0,216</u>	.	<u>20,223</u>	+7	
일반직 계	.		<u>20,216</u>	.	<u>20,223</u>	+7	
세무주사	.		<u>4,643</u>	.	<u>4,647</u>	+4	
세무주사보	.		<u>4,569</u>	.	<u>4,572</u>	+3	
세무서기보	.		<u>3,311</u>	.	<u>3,311</u>	+11	
전산서기보	.		57	.	<u>62</u>	+5	
열관리운영서기보	.		<u>12</u>	.	<u>11</u>	-1	
사무운영서기보	.		<u>244</u>	.	<u>229</u>	-15	
	.		.	.	.		